서울스프링페스티벌 대행용역 질의 응답

구분	내용	비고
질의1	[공동수급체 대표사선정 및 출자비율 기준 관련] 공고문 제4항 바목, 사목에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을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사업자(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으로 지정하면 되는지, 또는 대표사에 적용되는 별도의 최소 출자비율 요건(50% 이상 또는 50% 초과 등)이 있는지 질의 예를 들어, 3개사의 출자비율을 40:30:30으로 구성하는 경우, 출자비율 40%인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고문 3P 제4항 바목·사목
응답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대하여 별도의 최소 출자비율(50% 이상 또는 50% 초과)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는 공고문에 따라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과 공고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 및 실제 사업수행 비중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대표사의 출자비율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3개사의 출자비율이 40:30:30인 공동수급체에서 출자비율 40%인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사는 공고문에서 대표사에 별도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 요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와 구성원별 출자비율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질의2	[제출서류의 발급일 기준 적용 범위 관련]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의적용 범위에 대해 질의 참여인력의 경력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이전 근무처의 경력증명서도 모두 입찰공고일 이후 재발급 받아야하는지,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경력증명서도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되는지 확인 아울러 이전 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기존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등 대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안요청서 8P 2항
응답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이전 근무처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전 근무처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의 재발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폐업사실증명 등 해당 경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해당 근무경력의 근무기간 및 직무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해당 경력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3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에 대한 목차는 순서 변경, 세분화 등이 가능한지 확인	제안요청서 11P 3항
응답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의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평가항목 및 필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순서를 변경하거나 세분화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평가항목 및 필수 제안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평가위원이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분량과 작성 형식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4	[제안서 평가 관련] 제안서 평가 관련하여 PPT등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PPT자료에 애니메이션,영상 등 넣을 수 있는지 확인, 추가로 제출한 요약본(60P) 발표본이 동일한 파일이여야 하는지 확인	제안요청서 14P 2항
응답	PPT 발표자료에 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을 삽입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영상은 가급적 발표파일에 직접 삽입하고,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영상 재생시간을 포함한 발표 진행시간은 제안발표 시간에 포함되며, 영상 재생 오류나 발표 중 컴퓨터 오류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및 이에 따른 조치시간 역시 제안발표 시간에 포함됩니다. 인쇄 제출하는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과 USB로 제출하는 PPT·PDF 발표자료는 슬라이드 구성 및 실질적인 제안내용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상·애니메이션 등 인쇄물로 표현하기 어려운 요소는 인쇄본에 대표 이미지 또는 해당 장면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USB에 수록하는 발표자료에는 인쇄 제출한 발표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안내용이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질의5	[제안발표 순서 추첨 관련] 제안요청서에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참석하여 발표순서 추첨만 진행한 후 퇴실하고, 이후 발표자(PM)와 배석자가 별도로 참석하여(총3인) 제안발표를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안요청서 15P 1항
응답	제안평가 당일 평가장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업체별 총 3인 이내입니다. 발표순서 추첨은 평가장에 참석하는 3인 중 1인이 진행하여야 하며, 추첨 후 해당 인원이 퇴실하고 별도의 인원이 입실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표자료 확인, 컴퓨터 설정 등 발표 준비를 위한 경우에도 허용된 인원 외에 별도의 인원이 추가로 입실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표사의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발표 순서 추첨을 위해 별도의 인원이 참석한 후 퇴실하고, 이후 발표자 및 배석자가 입실하여 발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평가 당일 출입 인원 및 발표 절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	[재해예방 조치능력] 공동수급시 관련 자료는 대표사 1개사만 제출하면 되는지 3개사 모두 제출 해야 되는지 확인	제안요청서 19P 재해예방조치능력
응답	공동수급체의 정량평가 항목인 '재해예방 조치능력'은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대표사를 기준으로 제출·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의 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는 대표사의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내용 제안서에 포함되는 안전관리계획은 실제 사업 수행의 안전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전문협력업체가 보유한 안전인력 및 전문역량 등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질의6	[사업시 산출내역서 관련]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서식에 예시로 넣어놓은 항목과 내용 중 코드, 항목, 규격사양 등 최상단 항목관련은 고정값 사용 후 아래 샘플 내용만 변경가능한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안요청서 33P 서식 제6-2호 서식 제6-3호
응답	제안 단계에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은 유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각 중분류 아래의 실제 세부항목은 제안내용에 맞춰서, 제안사가 추가·분리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서식에 기재된 세부 품목은 작성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제안단계에서는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공통 세부유형 코드(01~10)를 조합한 세부코드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코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 과정에서 제안서와 산출내역서를 대조해 세부적으로 확정합니다. 다만 세부코드 입력이 면제되는 것이지, 세부항목 및 산출근거 작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안단계에서도 각 세부항목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 규격·성능 / 수량·단위 / 기간·운영회차 / 산출식 / 단가·금액 / 투입인력 / 수행주체 / 포함·제외사항 '1식', '일체', '적정수량', '추후 협의' 등의 표현만으로 산출근거를 갈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1식'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세부업무와 규격·수량·인력·기간·성과품 등을 비고란 등에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7	공동이행시 가격제안서 및 평가용 산출내역서 작성 시, 대표사가 총액 기준으로 일괄 작성하여 제출하는지, 아니면 3개사의 지분율/분담내역에 맞게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가	제안요청서 33P 서식 제6-2호 서식 제6-3호
응답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가격제안서 및 평가용 산출내역서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제안금액을 기준으로 대표사가 통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가격제안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에는 세부 항목별 수행주체 및 업무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제 수행업무와 비용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업무분장은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 계약조건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상 수행업무 및 비용부담 내역도 상호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8	[연계 거점 관련] 반포대교 연계 거점 관련하여 반포대교가 보행도로만 사용되면서 포장공사를 진행 중인데 27년 8월완료 예정으로 연계거점 공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업내용서 10P 3. 공간체계
응답	반포 연계거점은 잠수교 사용을 전제로 계획된 공간이 아닙니다. 제안사는 잠수교를 제외한 반포한강공원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연계거점은 현재 예정지로, 잠수교 포장공사 일정 및 현장 여건, 관련 부서 및 시설관리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위치와 사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위치 및 사용 범위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안 시 특정 공간의 사용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잠수교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9	[유료 프로그램 이용요금 확정 방식 관련]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은 제안서에 제시한 금액을 계약 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선정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는지 질의. 아울러 이용요금 산정 시 적용해야 할 별도의 기준이나 상한금액이 있는지, 계약 후 프로그램 세부내용 및 운영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 추가로 유료 프로그램 판매수익에 관련하여 판매 수익금의 귀속 대상이 발주처인지, 아니면 대행사 측인지 정확한 가이드라인 확인	과업내용서 12P 6항
응답	제안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 공공성, 유사사례, 원가 및 예상 판매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이용요금과 그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상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서에 제시한 이용요금은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며, 우선협상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실제 서비스 범위, 시민 접근성, 무료·유료 운영 범위 및 예상 판매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프로그램 세부내용이나 운영 여건의 변경 등으로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이용요금, 판매수량 또는 환불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사업으로 운영되는 유료 프로그램의 판매수입은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판매수입을 임의로 수납·사용하거나 용역대금 등 사업비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사·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또는 민간사업자가 자체 비용과 책임으로 별도 판매하는 관광상품 및 민간서비스의 경우에는 판매 주체, 수납 주체, 수수료 및 수익 귀속 구조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사업으로 운영되는 유료 프로그램의 판매수입은 서울시 귀속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수익 구조를 계약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질의10	[서울Pay+·신용카드사·금융기관 연계 범위] 서울Pay+·신용카드사·금융기관과의 연계는 발주기관이 기존에 확보한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인지, 대행사가 직접 신규 제휴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과업내용서 12P 6항
응답	서울Pay+ 등 서울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책 및 협력체계는 적용 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존 협력체계의 활용을 단순히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추진 방법, 운영 및 홍보 방안, 기대효과와 목표 등을 포함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서울Pay+의 적용 여부는 각 유료 프로그램 및 참여 상권의 특성, 결제 방식 등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모든 프로그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여행사 등과의 할인·캐시백·우선예매·관광패키지 등 신규 제휴 방안은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휴 추진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 제휴에 수반되는 할인재원, 비용부담, 브랜드 노출 및 사용 권한, 판매수수료 등 주요 조건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휴 대상 기관과의 협의 및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11	[감독단 운영비 편성 및 정산 기준 관련] 감독단 운영비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15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고정 편성으로 적혀 있는데 혹시 총 금액의 변동 여부도 있는지 확인. I-4 감독단 운영비 항목이 소계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 간접비 하단에 별도 작성해도 괜찮을지 확인	과업내용서 14P Ⅲ.1.다.⑤
응답	감독단 운영비는 과업내용서에 따라 공급가액 150백만원을 고정금액으로 편성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상합니다. 제안사가 임의로 감액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감독단 운영비는 산출내역서의 I-4 '총감독단 운영비' 항목에 별도 구분해 작성 바라며, Z항목의 일반관리비·대행수수료 등 간접비 항목으로 이동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독단 운영비는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기업이윤) 산정 기초에서 제외합니다. (예산서 총액 산출시 유의 바람) 단, 감독단 운영비의 원천징수, 이체 및 행정·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I-5 항목으로 별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질의12	사전검토 필수항목 (유기기구 안전검사 대상 여부·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하천점용 및 한강공원 사용 협의, 구조검토, 야간조명 영향)은 제안단계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또는 검토계획' 중 '검토계획'만 제출해도 감점 없이 인정되는지, 관계기관 협의 불가시(발주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제안사 자체 검토(법령 적용 여부, 개략 구조검토)로 충족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업내용서 15P 사전검토
응답	제안단계에서 관계기관의 공식 인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모두 완료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항목은 제안단계에서 '검토결과 또는 검토계획'을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의 사전 공식협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검토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선정 후 검토 예정'으로만 기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고, 검토 및 대응 계획이 적시되야 합니다. <다음> - 적용이 예상되는 관계 법령·기준 - 각종 필요한 인허가·신고·검사 항목 - 협의·승인 필요기관 - 예상 추진시기와 절차 - 제안사 자체 또는 전문가의 개략 기술·구조검토 - 예상되는 주요 위험요인 - 인허가 불가 또는 조건변경 시 대체방안 위 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한 검토계획은 형식상 제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검토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자체는 제안평가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13	[출연진 변경 시 이행 의무 및 예산 조정 기준 관련] 제안서에 '섭외 가능' 또는 '섭외 확정'으로 기재한 출연진은 계약 후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 또는 감독단의 요청에 따라 출연진을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변경 승인으로 기존 출연진에 대한 이행 의무가 해제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업내용서 16P 나
응답	제안서에 '섭외 가능' 또는 '섭외 확정'으로 명시한 출연진은 원칙적으로 제안내용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 또는 감독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 프로그램 구성, 연출 콘셉트, 일정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공식적으로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기존 출연진에 대한 이행의무는 승인된 변경내용으로 대체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출연진·프로그램과 예산조건을 협의해 최종 확정합니다. 반면 제안 이후의 섭외 실패, 협의 지연, 계약지연, 예산 과소산정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출연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행의무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며, 동등 이상의 대체안 제출 및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질의14	[이슈 콘텐츠 제안 및 예산 편성 기준 관련] 이슈 콘텐츠는 후보 3종 중 최종 1~2종을 확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안 단계의 산출내역서에는 후보 3종의 실행 예산을 모두 합산하여 편성해야 하는지, 또는 최종 운영할 1~2종을 가정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후보는 별도 견적으로 제시하면 되는지 확인	과업내용서 20P 마
응답	제안단계에서 후보 3종의 전체 실행예산을 모두 중복해서 총사업비에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제안하게 되는 프로그램 각 후보별로 예상 규모와 예상 실행예산은 각각 제시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 제안한 전체 후보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획·법률·기술·인허가 검토비용은 공통 개발비로 반영 - 최종 선정될 1~2종을 실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실행예산을 계약예산 범위에 반영 - 각 후보별 예상 실행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별도 기재 - 어떤 후보가 선정되더라도 정해진 이슈 콘텐츠 총예산 범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규모와 대체안을 제시 - 민간 기업 유치를 통한 외부재원 추진인지에 대한 구분과 상황에 따른 비율 표시 최종 시행 콘텐츠와 규모·횟수는 제안내용을 기초로 우선협상 및 예산배분 과정에서 확정합니다. 특히 이슈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간기업의 현금·현물 참여 또는 협찬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외부재원은 반드시 계약예산과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미확정 외부재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실행 가능한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질의15	제안서 작성 시 활용을 위한 기존 행사 BI 원본 디자인 파일(AI) 제공 가능 여부 문의	과업내용서 27P BI·디자인
응답	첨부파일을 확인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울스프링페스티벌 공식 BI 원본파일은 모든 입찰참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로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공되는 BI 파일은 본 입찰의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 바랍니다.	첨부파일제공
질의16	[키비주얼 시안 및 응용 디자인 제안 범위 관련] 키비주얼 최소 3개 시안 제시는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인지, 또는 우선협상자 선정 후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 제출하는 기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안 단계에서 3개 시안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 각 시안별로 프로그램 비주얼 및 매체별 응용 디자인까지 제시해야 하는지, 또는 대표 시안 1개를 선정하여 응용 디자인을 제시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과업내용서 28P 다
응답	과업내용서의 '최소 3개 시안 제시 후 선정안 고도화'는 계약 후 실제 디자인 개발 단계의 수행기준입니다. 따라서 제안서 제출단계에서 완성된 키비주얼 3개안을 모두 제작·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안단계에서는 2027년 콘셉트와 기존 BI를 어떻게 적용·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디자인 방향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키비주얼 시안 또는 충분한 디자인 예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비주얼과 매체별 응용디자인 역시 제안단계에서는 디자인 역량과 확장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적용 예시를 제시하면 되며,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 및 규격별 응용디자인은 계약 후 선정된 키비주얼을 기준으로 제작 해야합니다.	

질의17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인수인계 범위 관련] 기존 홈페이지의 관리 권한, 소스파일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선정된 대행사가 기존 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인수인계받는 방식인지, 발주기관을 통해 제공받는 방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개편·유지보수 및 서버·도메인 운영은 기존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또는 대행사가 별도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과업내용서 30P 라
응답	기존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자 권한 및 서울시가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의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을 통해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기존 운영업체와의 인수인계 과정에 협조할 예정이며,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기존 업체와 별도로 권리관계를 직접 해결하는 것을 전제 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7년도 홈페이지 연차개편·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반드시 기존 업체를 통해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스템과의 기술적 호환성, 서비스 연속성, 보안 및 자료 인수인계를 고려, 적정한 전문 협력사를 선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변경에 따른 기술적 조치와 운영방안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질의18	[SNS 유료광고 매체비 편성 기준 관련] 과업내용서에 SNS 유료광고 순매체비가 “10,000,000원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편성·집행 기준으로, 광고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매체비를 10,000,000원 이상 집행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업내용서 32P Ⅲ.3.마.
응답	맞습니다. 과업내용서상의 SNS 유료광고 순매체비 10,000,000원 이상은 최소 편성·집행 기준입니다. 해당 금액은 Meta, Google 등 실제 온라인 광고플랫폼에 집행되는 순매체비를 의미하며, 콘텐츠 제작비·광고대행수수료 등과 구분해서 산출·집행되야 합니다. 집행결과는 매체별 집행금액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19	핵심 협력사 13개 항목 기재 시 항목별 1페이지 구성이 필수인지, 표·요약 형태 통합 기재 가능 여부 문의	과업내용서 38P 핵심협력사
응답	전문분야별 1페이지가 아니라 실제 참여하는 핵심 협력업체별 1페이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1페이지 안에서 담당분야·역할·주요 실적·투입인력·참여범위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제안서에는 실제 참여업체별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발표자료에는 전체 핵심 협력업체의 구성·업무분장·지휘체계를 1페이지 이상으로 종합 및 요약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업체별 참여의향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되야 합니다. 또한, 제안한 핵심 협력사는 추후 정산시 동일한 항목과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7에 대한 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예산집행 되야합니다.	

질의20	정량평가 참여인력에서 사전규격의 '공동수급체 참여인원 합산'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공동수급 구성원과 협력사 소속 인력이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업내용서 38P
응답	공동수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정식 구성원 소속 인력은 합산해 정량평가 참여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수급 구성원 소속임을 증빙해야 하고, 과업기간 중 본 과업에 실제 투입률 50% 이상으로 참여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재직·경력·사회보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또는 외부전문가의 인력은 정량평가의 '참여인력' 점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21	하천점용, 한강공원 사용, 도로·교량 점용, 선박·바지선 안전검사, 유기기구 안전검사 등의 허가를 '사전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신청 주체와 시점(계약 후 신청 가능 여부), 발주기관·미래한강본부의 협조 범위, 관계기관의 불허 또는 조건 변경시 '인허가 조건 변경 또는 불허'로 보아 과업·계약금액을 조정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안서 제출 시점에 허가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업내용서 32P Ⅲ.3.마.
응답	제안서 제출시점에 하천점용, 한강공원 사용, 도로·교량 점용, 선박·바지선 안전검사, 유기기구 안전검사 등 법정 인허가를 실제로 취득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단계에서는 각 제안내용에 적용되는 법령, 필요 인허가·검사, 관계기관, 예상일정, 기술·구조상 주요 위험사항 및 대체방안 등을 포함한 검토결과 또는 구체적인 검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인허가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 및 관련 부서의 협조 아래 추진되며, 계약상대자는 신청·협의에 필요한 도면·기술자료·검토자료 등을 작성·제공해야 합니다. 공식 안전성검사, 구조검토, 전문기관 진단, 보험 등 계약 후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안전관리비 역시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의 불허 또는 새로운 조건 부과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승인된 대체안 또는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계기관의 조건변경으로 과업범위·규격·수량·기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의 변경관리 및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 준비 및 검토 부족, 신청지연, 자료미비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불허·지연은 원칙적으로 추가비용 또는 계약금액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22	통합홍보비가 350백만원이내인데 홍보비가 7%로 금액과 맞지 않음	과업내용서 50P
응답	통합홍보비는 총사업비의 7% 이내를 최종 적용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업내용서 일부에 표기된 '350백만원 이내'는 총사업비 7% 상한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으로, 총사업비의 7% 이내 기준을 적용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약 2.84억원 이내의 범위 홍보비에는 과업내용서에 정한 전략·인력, 디자인, 영상, 홈페이지, SNS·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기록·보도·번역 등의 항목을 포함해 편성	
질의23	[일반관리비 적용 요율 관련]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일반관리비에 적용해야 하는 지정 요율 또는 상한 비율이 있는지 질의. 별도의 기준이 있다면 적용 비율과 산정 기준 금액을 안내	과업내용서 59P 붙임2
응답	일반관리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 제안사가 적용요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본 용역은 행사관리 및 사업지원 성격의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8% 이내를 적용합니다. 8%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임으로, 제안사는 8% 이내에서 자체적인 적용률을 검토해 산출내역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비 산정기초에서는 과업내용서에서 별도 제외하도록 정한 감독단 운영비(I-4), 예비비(Y-1) 등 제외항목은 반드시 반영	
질의24	잠수교 행사장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기타
응답	현재 잠수교는 본 사업의 확정 행사공간으로 보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시 잠수교 사용을 전제로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포 연계거점은 잠수교를 제외한 '반포한강공원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사 및 시설사용 여건이 변경되어 잠수교 활용이 가능해지고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를 제안 단계의 기본 전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질의25	서울 모자이크·시민 플랫폼 / 1차 계약이 1,000만 원(2026.12.31까지)인데 시민 공모·선정(2026.11~12)도 포함 진행되는지, 확인	기타
응답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2026년 11~12월 시민공모 일정은 축제의 조기 준비를 위한 기본 추진일정(안)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2026년도 1차 계약금액은 10백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차 계약기간 중 실제 집행되는 업무와 비용은 해당 연차 계약의 범위와 금액 안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 계약기간에는 서울 모자이크 및 시민 플랫폼과 관련, 다음과 같은 조기 준비 업무를 우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 공모방향 및 모집계획 수립 / 공모안·심사기준 마련 /시민·자치구·관계기관 협의 / 공모 홍보 및 접수 준비 / 계약체결 시점과 일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모 개시·접수 실제 프로젝트 선정 이후 발생될 제작 지원금, 멘토링, 제작·운영비 등 본격적인 사업비 집행은 2027년도 2차 계약 및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체결 시점상 과업내용서의 2026년 11~12월 일정 전체를 그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 미이행으로 보지 않고, 우선협상 및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해 공모·선정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민공동창작 및 시민 플랫폼의 조기 착수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